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수원지방법원 2018. 4. 13. 선고 2017노5294 판결 모욕

수 원 지 방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건 2017노5294 모욕

피고인 A

항소인 피고인

검사 허용준(기소), 최명수(공판)

변호인 변호사 K(국선)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7. 7. 6. 선고 2017고정1277 판결

판결선고 2018. 4. 13.

주 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할 의도로 이 사건 댓글을 게시한 것은 아니었고 위 댓글의 표현이 다소 과 장되고 점잖지 못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그것만으로 피해자에 대한 모욕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량(벌금 3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022-10-06 판례 검색은 빅케이스

2. 판단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로서, 사람의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의미하는 외부적 명예를 보호법익으로 하고, 여기에서 '모욕'이란 사실을 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표현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한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9674 판결 참조).

원심이 채택한 적법한 증거에 의하면, 이 사건 게시물에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이런 촌 광대쉐이'라고 지칭하며 피해자를 비난하였고, 글의 말미에는 '니들은 이런애보고 따라 배우지마라!'라고 하여 피해자를 조롱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는 피해자의 명예감정을 해하는 모욕적 표현에 해당하고, 그 전체적인 표현의 내용, 앞서 본 게시물을 게시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구체적인 표현방법 등을 종합해 보면, 모욕의 고의도 넉넉히 인정되며, '광대쉐이'라는 표현을 사용한 것은 그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경멸적 감정을 표현한 모욕적 언사에 해당한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범행의 경위에 다소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모욕의 정도가 약하고 그 댓글을 삭제하여 게시기간이 비교적 짧았던 점, 집행유예 이상의 전과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나, 원심은 이러한 점을 모두 고려하여 벌금액수를 정한 것으로 보이고,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 이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는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장구(재판장) 이석준 김경인